

工業所有權審判事例

國內事件

實用新案登錄出願拒絕不服

〈大法院 第2部 判決〉(1985. 2. 8)

事件番號 : 84후 106

裁判長 : 김 형 기

關與法官 : 정 태 균 · 이 정 우 · 신 정 철

1. 審判請求人 (上告人) : 김 기(서울시 강남구 양재동 21-7)
2. 被審判請求人(被上告人) : 특허청장
3. 原審決 : 特許廳 1984. 9. 28字, 1983年 抗告審判(當) 第787號 審決
4. 主 文 : 上告를 棄却한다. 上告訴訟費用은 被審判請求人の 負擔으로 한다.
5. 理 由 : 被審判請求人 代理人的 上告理由를 判斷한다.

原審決 理由에 의하면 原審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事件考案은 구멍탄용 온수보일러에 使用하는 수조에 관한 것으로 하나의 燃燒室에서 2개의 온수순환회로가 형성되면서 각각의 온수 순환회로는 가열회로가 충분히 연장되는 3단식의 수실을 형성함에 특징이 있는 것인 바, 이는 인용참증에 표현된 하나의 구멍탄 온수보일러에서 2개의 분리된 온수순환회로가 형성되면서 각각의 온수순환회로는 가열회로가 충분히 연장되는 다단식 수실이 형성된 것과 대비할 때 양자는 同一性の 것이라고 認定되고 또 이 事件考案은 각각의 환수구 (5)(5')로 유입된 순환수는 하단 수실(3)(3')에서 일차 가열되어 수식의 형상에 따라 반우회 하여 反對側의 유출공(9)(9')을 통하여, 중간수실(2)(2')로 상승하고, 중간수실(2)(2')에서 재차 가열 되어 유입공(8)(8')을 통하여 상단수실(1)(1')에 유입된 후 수실의 형성에 따라 반우회 하면서, 3차 가열되어 유입공(8)(8') 反對側의 온수공급구(4)(4')로 출탕하는 것으로서, 인용참증에서도 각각의 급수관(6)(6')으로 유입된 순환수는 하부 구획벽(3)(3')에 의한 각각의 하단 수실에서 1차 가열

되어 수실의 형성에 따라 반우회하여 反對側의 유출공(4)(4')를 통하여 각각의 중간수실로 상승하고 중간수실에서 다시 가열되어 상부구획벽(3)(3')에 의하여 형성된 유출공(4)(4')을 통하여 상부수실에 유입된 후 또 다시 가열되어 온수배출관(7)(7')으로 출탕되는 것이므로 양자는 同一性の 考案이라고 인정되고 다만 그 제작 공정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製作工程의 간단화 및 效率化등은 設計에 있어서 항상 고려되는 사항으로서 이 事件 考案은 당업자가 필요에 따라 인용참증으로부터 누구나 용이하게 구성할 수 있는 考案이라고 判斷하여 拒絕事定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判斷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판단유탈, 고안의 同一性和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위에서 본 단순한 設計變更이 그에 의하여 새로운 作用效果가 發生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上告를 棄却하고 上告訴訟費用은 敗訴者의 負擔으로 하여 關與法官의 一致된 意見으로 上記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 ㉟